



(www.cau.ac.kr)

MAKER SPACE 운영 내규

2019. 3.

공 과 대 학

1. 중앙대학교 MAKER SPACE 운영 수칙(안)

2019.3.19. 제정

주무부서 : 공과대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MAKER SPACE의 안전한 운영관리와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MAKER SPACE 사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MAKER SPACE 신청

제2조(사용 자격) MAKER SPACE 사용 자격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본교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인사나 본교에 재직중인 자, 학생, 대학원생, 연구원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본교 재학생
2. 본교 대학원생
3. 본교 휴학생
4. 본교 연구생
5. 본교 외국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6. 본교 내국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7. 교내 각 부처 초청 인사 및 교내 업무 관련 수행자
8. 기타 MAKER SPACE 담당자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MAKER SPACE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한다.

1. MAKER SPACE 사용 시 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전염성 질환자 및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은 자
3. 사용 목적을 위배하거나 인적 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4. 사용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5. 사전 허가 없이 사용자 이외 타인을 출입시킨 자
6. 긴 머리는 묶지 않는 자
7. 샌달이나,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을 착용한 자
8. 반바지 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자
9. 헐렁한 옷을 입은 자
10. 넥타이는 착용한 자
11. 목걸이, 헐렁한 액세서리는 착용한 자
12. 기기 주변에서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는 자
13.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불필요한 잡담하는 자
14. MAKER SPACE 관리자의 허락없이 장비 혹은 공구를 외부로 반출하는 자
15.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지 않고 가공을 진행하는 자
16. 가공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지 않은 자
17. 음식물 및 애완 동물을 반입한 자
18. 기계를 작동시키고 기기 조작반경을 벗어나 다른 행동을 하는 자

19. 타인에게 압축공기를 쏘거나 본인의 얼굴에 압축공기를 쏘는 행동을 하는 자
20. 실습이나 가공중에 뛰어다니는 자
21. MAKER SPACE 관리자가 보기에 안전 사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인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MAKER SPACE 관리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자
22.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자

제4조(예약 구분) “시설물 사용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예약한다.

제5조(신청 기간과 절차) MAKER SPACE 대여 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사용 신청 기간 : 사용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 단기 사용 신청 기간 : 사용일 2주일 전부터 전일까지(단, 잔여실이 있을 경우 사용 일 당일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잔여일 확인 후, 관련 부서에서 MAKER SPACE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메일/팩스를 통하여 공과대학교 행정실에 접수
4. 신청서 접수 및 공과대학교 팀장님 승인 후 예약 최종 확정

제6조(예약 변경) 사용자 방문 목적의 경중에 따라 초청 부서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예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MAKER SPACE 사용

제7조(사용 대상) MAKER SPACE 관리자 이외에 MAKER SPACE 내에 공작기계실의 범용 밀링, 범용 선반은 재학생, 대학원생, 연구생 모두 사용을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즉시 퇴실 조치한다.

MAKER SPACE 입실 가능 시간 : 10:00 ~ 17:30(평일) / 주말 사용불가 / 10:00 ~ 15:30(방학기간)

제8조(귀중품 관리) 사용자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분실 시 MAKER SPACE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9조(MAKER SPACE 이용) 사용자는 MAKER SPACE 이용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MAKER SPACE 내에 공구대와 작업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 MAKER SPACE 내에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이를 변상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MAKER SPACE 내에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 금지

제10조(공동사용 준칙) 사용자는 관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MAKER SPACE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정돈
2. MAKER SPACE 내 타인의 작업에 방해되는 장난을 하지 말 것.
3. MAKER SPACE 내 금연
4. 부상자가 발생했을 시 반드시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운영 수칙 준수

제11조(변상) ① 내부시설 및 비품을 손괴,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 본인이 실비로 변상한다.

제12조(비상상황) 사용자는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입 금지) 사용자는 애완동물 및 화재 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등의 기타 위험물을 MAKER SPACE 내로 반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하며 추후 MAKER SPACE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제4장 입실/퇴실

제14조(시간) MAKER SPACE 입실/퇴실 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입실시간 : 사용일 당일 10:00부터
2. 퇴실시간 : 퇴실일 당일 17:30까지 (하계/동계 방학 기간엔 15:30까지)

부 칙

이 제정 수칙은 2019년 03월 19일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식1] <앞면>

시설물 사용 신청서

신청자 소속부서	
담당	팀장

경유(협조)부서	
담당	팀장

시설물 관리부서	
담당	팀장

● 사용 시설물(옥외를 사용할 때도 기재)

장 소		단 체 명		인원	명
사용목적		계 시 물	현수막 ()개 / 홍보물 ()장		
사용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사용기간	시부터 시까지		
기타사항	① 전기, 난방, 시청각기자재, 음향기기, 앰프 등을 사용할 경우 수량과 용량까지 기재하시고 관련 부서를 경유하여 협조를 받으세요. ② 현수막 및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행정실 또는 학생지원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모임을 갖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인) 학번: _____ 연락처 : _____
 지도교수(책임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인) 연락처 : _____

※ 지도교수(책임자) 서명 시 뒷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 소형강의실, 토폴실, 세미나실을 재학생이 학습목적으로 1회(일) 사용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상단 ‘신청자 소속부서’ 및 ‘경유(협조)부서’와 신청서상 ‘지도교수(책임자)’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집회신고서

집 회 명		단 체 명		집회장소	
집회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집회기간	시부터 시까지	집회인원	
집회목적	?※ 행사내역 첨부바랍니다.				
대표학생	대학(원) 학과 학년	성명 :	연락처 :		

※ 홍보물을 제작·게시 및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용자 보관)

장 소		단 체 명		인원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사용기간	시부터 시까지		
기타사용물	※ 시청각기자재·음향기기 등의 사용 및 대여문의 : 미디어제작지원실 경우 ※ 전기·난방사용 문의 : 시설팀 경유 ※ 게시물 : 현수막 ()개 / 홍보물 ()장				
대 표 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지도교수(책임자)	소속 :	성명 :	연락처 :		

※ 안내사항 및 승인조건은 뒷면을 참조바랍니다.

<p>준 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용 후 정리 및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이외의 사용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며,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보호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손망실의 경우 신청인 변상)</u> 4. 임의 기숙,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5.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전기기구·전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 관리부서와 근무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7. 학교행사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학교(관리부서)의 요구 시 조건 없이 양보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손상 또는 기자재의 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즉시 복구·변상해야 합니다. 9. 사용자의 부주의·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관리부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사용 중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나 방호실로 도움을 청하시면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p>※사용기간을 지켜주시고 종료 후 건물 방호근무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으세요.</p>
<p>승인 조건</p>	

< MAKER SPACE 서약 동의서 >

1. 중앙대학교 환경안전원의 안전교육 혹은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공간의 이용 및 장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합니다.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 즉시 퇴실되며 다시는 중앙대학교 MAKER SPACE 공간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영구 출입 정지)
3. 장비 사용교육을 받은 사람만 장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출입 및 사용 가능시간 외에 공간 및 장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5. 슬리퍼나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을 신고 출입할 수 없으며 그 외 공간에서도 작업 중 이라면 반드시 작업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6. 장비 및 공구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법을 모르거나 서툴다면 사용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재료, 공구,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의 관리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분실 및 도난, 파손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MAKER SPACE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남의 물품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일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MAKER SPACE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9. 재료 등을 관리의 동의 없이 책상, 바닥, 장비 등 공용공간에 잠시라도 방치하면 버린 재료라 간주하고 임의 사용 혹은 폐기합니다.
10. 장비 사용 후 반드시 청소 및 정리를 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11. MAKER SPACE 관리자의 허락 없이 장비 혹은 공구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12.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등 재학생(혹은 교직원) 신분에서 벗어난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본인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학내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3. MAKER SPACE 시설관리자는 MAKER SPACE를 이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는 도중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인명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손해배상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며 메이커스페이스 출입을 위한 안전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였습니다. 만일 상기 사항 및 메이커스페이스 사용을 위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사고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학번(사번)

이름

(인)

중앙대학교 공과대학